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. 2. 8 선고 2022가단12024 판결 [점유회수청구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

담당변호사 김형석, 김성수, 김은정, 문지영, 박규철, 엄도홍, 윤수

민, 이석원, 이정미, 이충원, 전철우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원

변 론 종 결 2022. 12. 14.

판 결 선 고 2023. 2. 8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.)을 인도하라.

이 유

1. 판단

원고는,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①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를 자력으로 침탈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정식의 절차(부동산인도명령 등)를 밟아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점, ②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절차를 살펴봐도 그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,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,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를 상실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,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제해성

별지